

대전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126566 판결 [사전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홍경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종국

변론 종결 2021. 2. 3

판결 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96,19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6. 임대인 C로부터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를 보증금 170,0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함에 있어, 2018. 7. 2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증금 중 136,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20. 7. 27.로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F으로부터 위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8. 7. 25.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다. 소외 공사는 피고가 F에 대한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F의 요청에 따라 2020. 12. 7. F에 신용보증한 123,807,150원을 상환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20. 12.

14.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소외 공사에 2020. 12. 8. 90,000,000원, 2020. 12. 9. 33,996,194원 합계 123,996,194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 제한 123, 996, 194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0.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길연